

의안번호	2216418
의 퇴 인	문금주 의원
회 답 일	2026. 5. 13.
추 계 번호	26B0566

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항만안전점검관이 관할 항만 내에서 자체안전관리계획 및 항만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총 192억 3,900만원(연평균 38억 4,800만원)으로 추계됨

- 본 추계는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항만안전점검관의 점검 등(안 제9조의3)	3,646	3,743	3,844	3,949	4,056	19,239	3,848

주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사업의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의2(항만 안전점검관 등) 신설	항만에서 제8조의2에 따른 항만운송 종사자 등의 항만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, 제9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·이행 확인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업무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항만안전점검관을 둔다.(제1항)	의무규정
2	안 제9조의3(항만 안전점검관의 점검 등) 신설	항만안전점검관 또는 항만안전점검요원은 관할 항만 내에서 제9조제1항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자가 수립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는지와 항만운송 종사자 등이 제8조의2에 따른 항만안전수칙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(제1항)	의무규정
3	안 제11조의2(항만 안전평가) 신설	관리청은 관할 항만하역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.(제1항) 1. 안전비용 투자에 관한 사항 2. 안전인력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3. 안전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4. 안전점검 실시 및 시정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5. 사업장 내 안전사고 발생현황 6. 항만안전수칙의 준수에 관한 사항 7. 선사와 항만운송 참여자, 항만운송 참여자 간, 항만운송 참여자와 항만운송 종사자 간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8. 그밖에 항만의 안전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	
		「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항만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항만하역사업자에게 「항만법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(제3항)	재량규정
		제1항에 따른 항만안전평가의 구체적인 대상,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(제4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9조의2(항만안전점검관 등) 신설	—	·미대상 － 현행법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동일한 규정으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2	안 제9조의3(항만안전점검관의 점검 등) 신설	○	·유사사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
3	안 제11조의2(항만안전평가) 신설	×	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－ 개정안에 따라 관리청¹⁾이 관할 항만하역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안전비용 투자에 관한 사항, 안전인력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, 안전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, 우수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－ 다만, 개정안은 항만안전평가의 구체적인 대상, 절차 및 방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			도록 규정하고 있고,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대상·기준 등을 현 시점에서는 알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, 공무원 기관부담금 요율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²⁾
-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과 국회 심의기간,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항만안전점검관 또는 항만안전점검요원이 관할 항만 내에서 항만하역사업자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는지와 항만운송 종사자 등이 항만안전수칙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경우 활동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 - 본 추계에서는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항만안전점검관이 전체 점검대상 항만 면적(69,250km²)에 대해 연간 2회 점검하는 것으로 가정

1)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8. "관리청"이란 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조제7항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.

「항만운송사업법」

제2조(정의)⑦ 이 법에서 "관리청"이란 항만운송사업·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,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.

1. 「항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: 해양수산부장관
2. 「항만법」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: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

2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공무원 기관부담금 요율

(2026년 3월 기준, 단위: %)

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
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	3.0	3.0	3.0	3.0	3.0	3.0
공무원 기관부담금 요율	13.129	13.193	13.285	13.379	13.475	13.559

- 연간 소요인력: 33명 $\frac{\text{점검대상항만면적} \times \text{연간최소점검횟수}}{\text{점검관1인당1일점검가능면적} \times \text{연간근무일수}} =$
- ※ 1인당 점검 가능 면적 = $\frac{40\text{km}^2}{1 + 0.1 \left(\frac{\text{실제물동량}}{\text{표준항만처리물동량}} - 1 \right)^3}$, 연간 근무 일수 = 264일,
실제물동량 = 14.9억톤, 표준항만처리 물동량 = 0.9억톤
- 기준 인건비: 1인당 80백만원(2026년 기준 항만안전점검관 평균 인건비)
- 기준 활동비: 1인당 14백만원(차량 임차비 및 연료비, 피복비, 교육비,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및 캠페인 비용 등)
- ※ 이때, 활동비 예산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□ 추계 결과, 항만안전점검관이 관할 항만 내에서 자체안전관리계획 및 항만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192억 3,9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항만안전점검관 등의 주기적 점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(단위: 명, 백만원)

	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
인건비	소요인력(A)	33	33	33	33	33	-
	인건비 평균 단가(B)	85	88	90	93	96	-
	기관부담금(C)	11	12	12	12	13	-
	소계[D=A×(B+C)]	3,184	3,281	3,382	3,487	3,594	16,929
활동비	소요인력(E)	33	33	33	33	33	-
	활동비 단가(F)	14	14	14	14	14	-
	소계(G=E×F)	462	462	462	462	462	2,310
추가재정소요(H=D+G)		3,646	3,743	3,844	3,949	4,056	19,239

주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사업의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3) 40km² = 차량을 이용한 최대 점검가능 면적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김성원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성원	02-6788-4650	holyone@assembly.go.kr